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128호 2019. 9. 30.(월)

【규 칙】

○ 옥천군 규칙 제1377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19-92호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정고시 ..29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9-5호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33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19-846호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 옥천군 공고 제2019-861호 2019.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52

○ 옥천군 공고 제2019-865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 옥천군 공고 제2019-867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60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36호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2

【기 타】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27호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84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규칙 제1377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

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옥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

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5조(조사대상자의 구분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

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최근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

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0조(중복조사 금지)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15조(조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분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1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직접조사하거나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업　　종 :　　○ 법 인 구 분 : 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주요사업 :　　○ 종류별구분 : 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 옥천군내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축물연면적	근무인원
				자가, 임차	㎡	㎡	명
				자가, 임차	㎡	㎡	명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

옥 천 군 수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의 경우 "엑셀" 파일로 제출하실 법인은 공직자통합메일(이메일) "OOOO@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는 "□" 내에 "∨"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대상기간 사업연도별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옥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우)373-809 충북 옥천군 · 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재무과

※ 문의사항 : 전화 043) 730-3202 / 팩스 043) 731-2486

※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은 부족시 복사하여 사용가능하며, 옥천군 재무과(☎043-730-3202)로 전화주시면 이메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정기조사 제출서식 목록

1. 공통 제출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연도별 결산보고서 ⇒ 제본·편철된 것 일체

□ 각 사업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 ⇒ 제본·편철된 것 일체

□ 각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
- 계정명, 자산(물건)명, 취득일자, 수량, 취득(장부)가격, 상각액 등이 기재된 세부 명세서

□ 각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계정별원장(보조장)
- 토지(용지), 건물, 시설(구축)물, 차량운반구, 건설(중기)장비, 건설중인자산 등 계정

□ 각 사업연도별 소득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신고)내역서

□ 각 사업연도별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별 세부(산출)내역서

□ 최근 5년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에 한함
- 사업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 제54호서식(부표포함)[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건축물관련 도급공사 원가명세서 및 계약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도급, 위탁운영, 임대차 등) 사본

2 추가 제출서류 (건설업 법인에 한함.)

□ 조사대상기간내 준공된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서 및 준공건물의 용지계약서 사본

□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기타 건축물 신(증)축과 관련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조사 작성서식 목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옥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 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 소득세 납부액 |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 법인세법 98조 |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 산출 지방소득세 | : 합계(과세표준액) ×「지방세법」제103조의 13 세율(소득세의 100분의 10)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년)

사업장	군　　읍면　　로	사업장명	

(단위 : 원)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기 타	법인세법 제98조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옥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수시 고용인 급여 포함)**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 포함)

※ 월 통상인원(종업원수) = 상시종업원수(관리,생산,임시) + 수시종업원수(당월의 일별 고용인원수 합계/당월 일수)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4년~2015년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 2016년 이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016년 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50인)에서 월평균급여액(1억3,500만원)으로 변경

주) 급여총액은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급여가 기록되고 있는 장부 참조 : 제조경비장(생산직), 일반관리비대장(사무직), 판매비장(판매직), 건설중인자산계정(직영공사 인부임), 시공비, 운반비 등 고정자산의 각 계정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　　년)

사업장명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합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임시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옥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세부 사용내역 등을 연면적별로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구분 참조**

과 세 대 상	비 과 세 대 상
◦ 건물,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화장실, 창고 ◦ 무허가건물, 임대건물 ◦ 강습소, 수강소 기숙사 ◦ 공장현장사무소(1년이상) ◦ 코니탑(1년이상)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 건물이 없는 기계장치(수평투영면적) ◦ 콘테이너(천막포함)	◦ 복리후생시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 -기숙사, 합숙소, 사택, 체육관, 구내식당, 의무실,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목욕탕, 탈의실, 이발소, 대피시설 ◦ 무기고, 탄약고 ◦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사업소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　　년~　　년)

(단위 : 원, ㎡)

사업연도 (7월1일기준)	사업장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식당	③기타	소 계 (㉡)					

〈비과세면적 중 '③기타' 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

사업연도	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	사용면적(㎡)	사업연도	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	사용면적(㎡)

[별지 제2호서식]

압 수·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생년월일) :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3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관						
압수·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옥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상 호(법인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법인번호(생년월일) :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 목록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옥 천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옥천군 고시 제2019-92호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정고시

제27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9.9.25.)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함.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529,879,789	487,583,260	42,296,529	8.67%
일 반 회 계	444,652,475	414,337,394	30,315,351	7.32%
특 별 회 계	85,227,044	73,245,866	11,981,178	16.36%
공기업 특별회계	49,912,482	39,584,673	10,327,809	26.09%
ㅇ수도사업 공기업	25,200,346	17,722,090	7,478,256	42.20%
ㅇ하수도 공기업	24,712,136	21,862,583	2,849,553	13.03%
기타 특별회계	35,314,562	33,661,193	1,653,369	4.91%
ㅇ수질개선사업	18,699,491	18,212,805	486,686	2.67%
ㅇ대 지 보 상	168,987	168,987	0	0.00%
ㅇ주민소득지원사업	1,836,452	1,836,452	0	0.00%
ㅇ의료보호기금운영	236,323	234,833	1,490	0.63%
ㅇ농공지구조성	2,996,127	2,917,580	78,547	2.69%
ㅇ주차장관리	7,871,365	7,856,965	14,400	0.18%
ㅇ산업단지조성	3,505,817	2,433,571	1,072,246	44.06%

2. 일 반 회 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세입	합 계	444,652,745	414,337,394	30,315,351
	지 방 세	24,309,000	23,659,000	650,000
	세 외 수 입	15,656,141	12,701,684	2,954,457
	경상적세외수입	6,708,507	5,936,550	771,957
	임시적세외수입	8,947,634	6,765,134	2,182,500
	지 방 교 부 세	215,960,902	215,040,620	920,282
	조정교부금등	19,539,920	18,019,000	1,520,920
	보 조 금	124,203,145	115,037,090	9,166,055
	국고보조금 등	100,746,091	94,456,291	6,289,800
	시·도비보조금	23,457,054	20,580,799	2,876,2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983,637	29,880,000	15,103,637
세출	합 계	444,652,745	414,337,394	30,315,351
	일 반 공 공 행 정	29,626,093	25,758,974	3,867,119
	공공질서 및 안 전	15,731,765	14,178,987	1,552,778
	교 육	3,829,239	2,759,488	1,069,751
	문 화 및 관 광	22,874,904	19,903,687	2,971,217
	환 경 보 호	23,165,027	19,380,911	3,784,116
	사 회 복 지	112,554,765	108,787,061	3,767,704
	보 건	13,082,183	12,898,763	183,420
	농 림 해 양 수 산	80,171,652	70,832,228	9,339,424
	산업·중 소 기 업	11,959,623	9,306,843	2,652,780
	수 송 및 교 통	39,165,271	35,052,716	4,112,555
	국토 및 지역개발	29,987,782	27,185,768	2,802,014
	예 비 비	4,668,301	10,949,290	△6,280,989
	기 타	57,836,140	57,342,678	493,462

3.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과목 \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수입	합계	49,912,482	39,584,673	10,327,809
	사업수입	16,659,800	16,459,083	200,717
	자본적수입	33,252,682	23,125,590	10,127,092
지출	합계	49,912,482	39,584,673	10,327,809
	사업비용	13,456,671	12,304,734	1,151,937
	자본적지출	36,455,811	27,279,939	9,175,872

4.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세입	합계	35,314,562	33,661,193	1,653,369
	지방세	0	0	0
	세외수입	1,594,760	447,443	1,147,317
	경상적세외수입	215,365	171,812	43,553
	임시적세외수입	1,379,395	275,631	1,103,764
	지방교부세	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0	0	0
	보조금	20,681,547	20,320,057	361,490
	국고보조금 등	19,126,308	18,765,115	361,193
	시·도비보조금	1,555,239	1,554,942	2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38,255	12,893,693	144,562
세출	합계	35,314,562	33,661,193	1,653,369
	환경보호	18,699,491	18,212,805	486,686
	사회복지	200,923	200,923	0
	농림해양수산	1,836,452	1,836,452	0
	수송및교통	7,871,365	7,856,965	14,400
	국토및지역개발	6,670,931	5,520,138	1,150,793
	기타	35,400	33,910	1,49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9-5호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사업의 목적 : 비생산성 임야를 영농이 가능한 완만한 **경사지로** 개간(농지조성)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연번	사업내용	위치	면적(㎡)	기간	소요액(천원)	시행자	비고
1	개전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산35-3	900	2019.9.17.~2020.4.30.	18,900	순흥안씨문성공파병일공종중 대표 안영철	

3.사 업 효 과 : 비생산성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함.

옥천군공고 제2019-846호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의 내용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내용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성별평가위원원회 설치 및 운영 구체화(안 제9조~제11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mr119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31, 3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견 제출

○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옥천군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성인지 관점의 향상, 평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4. 옥천군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

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 요구차이

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6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7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

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군수는 통지받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업무소관국장),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평가 교육)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자문) 군수는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평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옥천군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 ----------.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옥천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성인지 관점의 향상, 평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제4조(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4. 옥천군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 요구차이 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제6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군수는 통지 받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업무소관국장),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 설>	제12조(평가 교육)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평가 자문) 군수는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평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861호

2019.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19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 개별주택 278호
다.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 옥천군 홈페이지(www.oc.go.kr)
옥천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

2. 이의신청

가. 신 청 기 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
나.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
라.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마.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옥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및 조정 공시

옥천군 공고 제2019-865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 명시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

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4,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주차장 보조”로 한다.

제4장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람
3.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람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보조방법) 보조금액은 제22조에 따른 주차장(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보칙	제4장 주차장 보조
<신 설>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람 3.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보조금액) 보조금액은 제22조에 따른 주차장(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신 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867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과정 및 신청서식 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

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4, FAX : 043) 731-324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주차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제2조 관련)

구분	주차장 설치 유형	규 격	보조금액	비 고
개인주택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마당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170만원 이하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평행주차시설 : 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150만원 이하	
		직각 주차시설 : 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110만원 이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건물 간 면적 3미터×11미터 이상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경우		1면당 50만원 이하 최대 5,000만원	「주택법」에 의한 용도 변경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4">주차장 현황</td><td>주차장위치</td><td colspan="4"></td></tr>
<tr><td>주차장형태</td><td colspan="4">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td></tr>
<tr><td>공사 기간</td><td colspan="2">. . . ~
. .</td><td>규 모</td><td>대 / ㎡</td></tr>
<tr><td>완료(예정)일자</td><td colspan="4"></td></tr>
</table>

※ 차량번호 : 호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차장 현 황	주차장위치			
	주차장형태		규 모	대/ ㎡
	설치신청일		준 공 일	
	공사금액		보조금액	원

※ 차량번호 : 호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이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보조금 신청금액		₩_____ (일금 원정)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구 동 번지
	계좌번호 (청구인 명의)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보조금을 청구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

(앞면)

설 치 일	. . .	규 모	대 / ㎡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설 치 자		전화번호	
주차형태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 간 공동주차( ), 기타( )		
설치형태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 간 담장철거( ), 기타( )		
공사금액(원)		보조금액(원)	

	조사일시	위반내용	조 치 내 용	확 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조사 및 조치 내용						

(뒤면)

	조사일시	위반내용	조 치 내 용	확 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조사및조치내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						

[별지 제5호서식]

<table>
<tr><td colspan="7">[ ] 주차장 관리주체 변경신고서</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3">· 핸드폰 :
· 집 :</td></tr>
<tr><td rowspan="3">변경내역</td><td colspan="3">변경 전</td><td colspan="3">변경 후</td></tr>
<tr><td>성명
(단체명)</td><td>생년월일</td><td>주소</td><td>성명
(단체명)</td><td>생년월일</td><td>주 소</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변경사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7">「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7">1.증빙서류</td></tr>
</table>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36호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순화대상인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안 제11조,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4823, FAX : 043) 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사업이라 함”을 “수도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경우 에”를 “경우에”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재정지원은 이를”을 “재정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6조제1호 중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의 의한다”를 “예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업무 상황을 익년도”를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고서에 한한다”를 “보고서로 제한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제2조(사업의 범위) ---------- 수도사업----------.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 1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옥천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법 제13조에 따라 ----------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옥천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1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11조(일반회계부담) ----------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3. 그 밖에 ----------
제12조(출자) ① 옥천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제12조(출자)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 경우에----------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 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④ ----------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금액으로 한다.	---------- 해당연도 ---------- 따른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생 략)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재정지원) --- 각 호---------- ---- 재정지원을 ----------.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저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삭 제 4. (생 략)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1. 법에 따른 ---------- 2. ---------- ------- 다음 연도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른 ----------.

② 제1항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예의 의한다.	② ---------- 예를 따른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회계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2. ---------- 따른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 각 호----------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2. ---------- ----------- 보고서로 제한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7호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18. 7.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기준(최저보험료 이하)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저소득층 기준 정비 및 최저보험료 정의 신설 (안 제2조)

-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2천원 미만**인 규정을 **최저보험료 이하**인 규정으로 변경
-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함.

○ 환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2천원 미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제9조(지원중단)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